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신복자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97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8월 11일

발 의 자: 신복자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영옥,
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
김원태, 김재진, 김종길,
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
박 석, 박성연, 박춘선,
서상열, 오금란, 유만희,
유정희, 윤영희, 이성배,
이종태, 이종환, 정준호,
최민규, 최재란, 홍국표,
황철규 의원(31명)

1. 제안이유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약칭: 전통시장법)에 따르면 상인회, 상점가진흥조합,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그러나 상인연합회의 지회인 서울상인연합회는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 활성화,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 확보 등 핵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.
- 최근 「전통시장법」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지역별 지회에 대한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상인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4조제2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(이하 “서울상인연합회”라 한다)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서울상인연합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서울상인연합회에 대하여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서울상인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원사업) (생 략)	제4조(지원사업) ① (현행 제목 외 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설 립된 <u>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(이하 “서울상인연합회”라 한다)의</u> <u>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</u> <u>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</u> <u>나 지원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</u> <u>우 서울상인연합회의 사무에 대</u> <u>하여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 이</u> <u>경우 시장은 서울상인연합회에</u> <u>대하여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</u> <u>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</u> <u>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서울상</u> <u>인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</u> <u>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(지원사업)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 지원비용이 발생하나 서울시 관련부서(민생노동국 상권활성화과) 문의 및 각종 자료 등 확인결과 이는 기추진사업¹⁾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	이 선 희
추계세제팀장	김 중 헌
추 계 분 석 관	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[기추진사업]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(現민생노동국)에서 <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>을 통해 서울상인연합회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※ 참고로 최근 3년간 서울상인연합회 지원 관련 예산은 2022년 400,000천원 / 2023년 400,000천원 / 2024년 200,000천원임